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4. . .	
연월일	(제 회)	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묘에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는 바, 5·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봉안묘에 묘비를 설치할 때에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, 봉안당, 봉안담,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3조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기반영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3호의 중 “묘비제작비”를 각각 “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국가 등의 시책) 정부는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·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, 민주·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사망 시의 예우: 5·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<u>묘비제작비</u>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5·18민주묘지(이하 "국립5·18묘지"라 한다)에 안장되는 5·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<u>묘비제작비</u>를 지원하지 아니한다. 4. (생략)	제3조(국가 등의 시책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<u>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</u>-----. 4. (현행과 같음)